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12. 9.  
행정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1. 11. 16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1. 11. 17.

다. 상정일자: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건설위원회(2021.12.9.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교통지도과장 박광운】

### 가. 제안이유

주차요금 단수 정산방식의 현행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,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 일부개정(2021.7.20.시행) 사항을 반영하여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주차요금 감면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주차요금 결제방법이 현금에서 카드 변경에 따른 단수계산의 단위 변경(별표1)
  - 단수계산 “100원 미만”을 “10원 미만”으로 단위 변경
- 2) 주차요금 감면대상 확대(별표1)
 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

참전유공자 주차요금 80% 감면
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주차요금 50% 감면

### 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- 본 개정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주차요금 결제방법이 현금에서 카드로 변경됨에 따라 주차요금 단수 정산방식의 현행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,
-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일부개정(2021.7.20. 시행)<sup>1)</sup> 사항을 반영하여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주차요금 감면 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내용으로는  
주차요금 결제방법 변경에 따른 단수계산의 단위 변경(별표1)에  
주차요금 감면 할인 시 발생하는 단수계산의 단위를 기존 “100원 미만”에서 “10원 미만”으로 변경하고,
- 주차요금 감면대상(별표1)에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주차요금 80%를 감면하는

1)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7조(주차요금의 감면 등)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 이 경우,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한 주차장 이용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.

7. 「다둥이 행복카드」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,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50을 할인한다.

7의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인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50을 할인한다. <2021.7.20.>

13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.

내용과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주차요금 50%를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함.

- 본 조례안은 주차요금 결제방법이 현금에서 카드 등 간편결제 방식으로 변경 추세에 따른 정산방식을 현행화하기 위한 것으로,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주차요금 단수계산의 단위를 기존 ‘100원 미만’에서 ‘10원 미만’으로 변경한 내용은 마포구 세입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며,
- 주차장법 제9조2), 제14조3)에 따르면 구청장은 구청장이 설치·관리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를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.
- 이에 참전유공자와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은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일부개정(2021.7.20. 시행)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,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특별한 법령위반 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---

2) 「주차장법」 제9조(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(이하 이들을 합하여 “노상주차장관리자”라 한다)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,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. <개정 2011. 6. 8., 2016. 1. 19.>

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.

3) 「주차장법」 제14조(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(이하 “노외주차장관리자”라 한다)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.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. <개정 2016. 1. 19.>

- 또한,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일환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추가 도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며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의 주차장 요금 할인을 통해 안정적인 가족 기능 유지와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- 5. 토론요지: 없음
- 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- 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- 8. 기타: 없음